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이동 등 상 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 사항을 반영함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2. 3. 17. ~ 2022. 4. 6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 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”으로, 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”를 “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<u>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</u>(이하 "예술품등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<u>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</u>(이하 "전문매각기관"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(이하 "대상기관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선정된 기관은 <u>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</u>에 해당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6조(전문매각기관의 선정) ① 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본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박성호(2133-3357)